



관촌면이장회보

제2024-1
2024.1.4.(목)



하나되어, 모두가 행복한 **임실**

- 함께하는 희망농업 - 활력있는 지역경제 -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- 품격있는 교육·문화

모두가 즐겁게, 보람차게, 건강하게, 행복하게, 살고 싶은 관촌

나를 위한 힐빙스[힐링 + 웰빙 + 헬스] 관촌

- 몸과 마음이 쉼을 얻는 힐링여행 1번지
- 삶의 의미와 가치를 누리는 웰빙라이프
- 건강한 삶의 최적지 헬스피어
- 농촌다움을 구현하는 행복공동체



목 차



《총무팀》

1. 각종 동향파악 협조 1
2. 2024년 희망법률상담실 운영 안내 1
3. 2024년 재활용품 수거 교환사업 기준 변경 알림 1
4. 이장 대상 정치관계법 안내 2

《산업팀》

1. 2024년 「새해농업인실용교육」 추진계획 알림 3
2. 2024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안내 3
3.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 3
4. 2024년 청년후계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안내 4
5. 2024년 청년후계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안내 4
6. 2024년 산림작물(독활, 복분자) 신청 안내 4

《재무팀》

1.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·면허세 납부 홍보 및 독려 5
2. 2024년 1월 자동차세(신규) 연납 신청·등록 홍보 5

《복지팀》

1. 희망2024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모금 안내 6
2.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협조 안내 6
3. 남원시 승화원 공동사용 협약 및 화장장려금 지원 폐지 안내 6
4. 관내 의료기관 휴업 안내 6

총무팀

1. 각종 동향파악 협조

○ 협조대상

- 마을회의 및 자체행사, 기관단체 모임, 사건·사고, 주민 사망 등
- 민원제기 및 건의사항, 면정업무에 관한 의견, 미담사례, 출향인사 동향 등

○ 알림방법: 면사무소 총무팀 전화연락 ☎ 063-640-4282~5

- * 기관단체·마을별 야유회 및 모임을 예정하고 있는 단체는 수시로 연락 요망
- * 이장회보는 마을방송을 통하여 전파하고, 마을회관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규

2. 2024년 희망법률상담실 운영 안내 **【붙임1】**참고 p.7-8

○ 상담일정 : 월 4~5회

- 주간상담 : 매월 1·3·5주 수요일 오전 9:30~11:30, 오후 14:00~17:00
- 야간상담 : 매월 2·4주 목요일 오후 18:00~20:00

○ 장 소 : 전라북도청 희망법률상담실(1층)

○ 상담방법 : 예약 후 방문 및 전화상담(☎063-280-2847), 온라인 상담(도 홈페이지)

○ 상 담 관 : 희망법률상담 변호사(20명) 윤번제 운영

3. 2024년 재활용품 수거 교환사업 기준 변경 알림

○ 내 용 : 교환기준 변경 및 인당 교환물품 수량 제한

구 분	용 량	수 량		교환물품 (건전지/화장지)
		당초	변경	
종이팩 (우유·주스 ·두유 등)	200ml	20	20	1
	500ml	10	10	1
	1000ml	5	5	1
폐건전지	AA, AAA 등	5	10	1
아이스팩	아이스팩	5	5	1
상패	친환경상패	2	2	1

※ 월별 1인당 수령 가능한 교환물품 수량을 90개(건전지 및 화장지 합산)로 제한

○ 적용시기 : 2024.1.1.(월)부터

소 관	주 요 내 용
-----	---------

총무팀

4. 이장 대상 정치관계법 안내 【붙임2】 참고 p.9-11

가. 법원 판례 주요내용

-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하나로 이장을 들고 있는 이유는, 이장은 그 업무 및 직책상 선거에 직·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것이므로, 선거의 자유·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고, 이러한 제한은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.(대전고등법원 1996. 12. 27. 선고 96노242 판결)

나. 관련법령

1)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(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)

-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,
-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거사무원, 회계책임자, 활동보조인, 연설원, 대담·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거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90일까지(24.1.11.까지) 그 직을 사임해야 하고, 선거일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습니다.

2) 「공직선거법」 제86조(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)

- 이장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
-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(예정)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
-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
- 정당 또는 후보(예정)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

다. 벌칙 : 3년 이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 벌금(선거법 제255조①제2호, 제10호.)

소 관

주 요 내 용

산업팀

신규

1. 2024년 「새해농업인실용교육」 추진계획 알림

- 교육일시: 2024. 1. 22.(월) 09:30
- 교육장소: 관촌면사무소 회의실(2층)
- 교육대상: 품목별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전업농가 및 일반농업인
- 대상인원: 80명
- 교육내용
 - 영농 계획 수립 및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(PLS) 중심 교육
 -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, 탄소중립 실천 교육 등
- * 전략작목(양봉, 고구마, 양파, 감자, 마늘 등) 교육 향후 예정

시 간		내 용	비 고
09:30~10:00	30'	등록	
10:00~10:30	30'	공익직불금 농업인 교육	DVD 영상물
10:30~12:30	120'	고품질 쌀 안정 생산기술 교육	자체강사
12:30~13:30	60'	중 식	
13:30~14:30	60'	농약 안전 사용 교육	DVD 영상물

신규

2. 2024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안내

- 접수기간: 2023. 12. 26.(화) ~ 2024. 1. 31.(수)
- 사업신청: uni.agrix.go.kr (농림사업정보시스템)
- 신청규모: 전국 1,000명
- 신청연령: 만 18세이상~ 만 50세미만
- 독립영농경력: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
- 교육이수: 농업계 학교(농고농대)졸업생, 농식품부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 이수한사람
- 신청제외: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경영자, 공공기관 상근 근로자

신규

3.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

- 접수기간: 2023. 12. 26.(화) ~ 2024. 1. 31.(수)
- 사업신청: uni.agrix.go.kr (농림사업정보시스템)
- 신청규모: 전국 5,000명
- 신청연령: 만 18세이상~ 만 40세미만
- 영농경력: 예비농업인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
- 소 득: 재산 및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* 건강보험료 기준

소 관	주 요 내 용
산업팀 신규	<p>4. 2024년 청년후계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안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모집기간: 2024. 1. 2.(화) ~ 2024. 1. 29.(월) ○ 사업목적: 영농창업 초기 창업농에게 정책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, 초기 자금부담 경감하여 영농 의욕 고취 ○ 지원자금: 청년후계농 육성자금, 귀농 창업자금 ○ 사업내용: 이자 중 0.5% 지원(최대 2.5백만원/연), 최대 3년(36개월분) 지원 ○ 사업신청: 면사무소 방문접수
신규	<p>5. 2024년 청년후계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안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모집기간: 2024. 1. 2.(화) ~ 2024. 1. 29.(월) ○ 사업목적: 영농창업 초기 창업농에게 농지, 농산물 재배시설 등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 정착 도모 ○ 사업대상: 청년후계농(2019~2023년), 청년창업농(2020~2023년) ○ 사업내용: 농지, 농산물 재배시설, 축사 등 임차료 50%(최대 2ha)지원,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 ○ 사업신청: 면사무소 방문접수
신규	<p>6. 2024년 산림작물(독활, 복분자) 신청 안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기한: 2024. 1. 17(수) ○ 지원대상: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(임)업인 ○ 대 상 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목이 임야인 경우: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-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: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(전, 답, 과수원 등) ○ 지원비율: 보조 40%, 자부담60% ○ 지원대상: 기준면적 1,000㎡ 이상 ○ 지원내용 및 사업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독활: 11,250천원/ha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종묘: 15,000주/ha × 400/주 ⇒ 6,000천원/ha · 퇴비: 30,000kg/ha × 1포/20kg × 3,500원/포 ⇒ 5,250천원/ha - 복분자: 15,700천원/ha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종묘: 20,000주/ha × 500/주 ⇒ 10,000천원/ha · 부직포: 30롤/ha × 90,000원/롤 ⇒ 2,700천원/ha · 지주대(Y자형): 1,000개/ha × 3,000원/개 ⇒ 3,000천원/ha ○ 사업신청: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

소 관	주 요 내 용
재무팀 신규	<p>1.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·면허세 납부 홍보 및 독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진기간 : 2024. 1. 2. ~ 2024. 1. 31. ○ 대 상 자 : 과세기준일(2024년1월1일) 현재 법령에 따라 부여받는 면허, 허가, 인가 등과 관련된 행위를 받은 자 ○ 향후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장회보 게재, 마을방송, 현수막, 면사무소 입간판 설치 납부 홍보 - 관촌면 TV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 문자 안내 - 군청 재무과 및 면사무소 합동 납부 홍보·독려반 운영 <p>2. 2024년 1월 자동차세(신규) 연납 신청·등록 홍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홍보기간 : 2024. 1. 2. ~ 2024. 1. 31. ○ 연납신청·등록기간 : 2024. 1. 2. ~ 2024. 1. 31. ○ 대 상 : 자동차세 연납 신청·등록을 하지 않은 관내 소재 차량 ※ 기존 연납 등록 차량은 제외 ○ 홍보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장회보 게재 - 관촌면 TV 자동차세(신규) 연납 신청·등록 문자 안내

소 관	주 요 내 용
<p>복지팀</p>	<p>1. 희망2024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모금 안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 간: 2023.12.1.(금) ~ 2024.1.31.(수) ○ 내 용: 마을별 이웃돕기 성금 자율 모금 협조 ○ 접수처: 관촌면 복지팀 ○ 주 최: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<p>** 모금된 성금은 긴급지원, 명절지원, 월동난방비 지원,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, 사업비 등으로 지원됨.</p> <p>2022년 임실군 모금액 590,372(천원)/ 배분액880,000(천원)</p>
<p>신규</p>	<p>2.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협조 안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 상: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 ○ 지원내용: 복지상담, 긴급지원(생계, 의료비 등), 공적 급여 신청, 통합사례관리 등 ○ 협조사항: 도움이 필요한 이웃 발견시 면사무소에 제보 (관촌면 복지팀 ☎640-4422~6) <p>3. 남원시 승화원 공동사용 협약 및 화장장려금 지원 폐지 안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 시 일: 공동사용 개시일 <u>2024.1.1.</u>~ ○ 이용금액: (현행)50만원/1일전 예약-> <u>6만원/3일전 예약</u> ○ 위치 및 이용시간: 남원시 솔터길 40-36, 연중 무휴 08:00~17:00 <p>* 24년 화장장려금 신청 대상자:2023.10.1. ~ 2023.12.31.(3개월)</p>
<p>신규</p>	<p>4. 관내 의료기관 휴업 안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료기관: 임실병원 ○ 소 재 지: 임실읍 운수로 15 ○ 휴업일자: 2024.1.2. ~ 2024.1.31. ○ 사 유: 경영상

I

희망법률상담실 세부운영

① 방문·전화 상담

- 운영기간 : 월 4~5회 (1·3·5주 수요일, 2·4주 목요일) / 도 희망법률상담실
- 상담절차 : 전화 예약신청 → 방문·전화상담(30분)
- 상 담 관 : 희망법률상담변호사(20명) 윤번제로 지정 운영

② 온라인 상담

- 상담신청 : 도 홈페이지 희망법률 상담실 운영사이트 접속
- 상담절차 : 신청서 입력 → 상담접수
- 상 담 관 : 신청일 이후 방문하는 희망법률상담 변호사

II

운영 일정

① 운영 일정 : 월 4~5회

월	운영일자		월	운영일자	
	주간 (오전, 오후)	야간		주간 (오전, 오후)	야간
1	3, 17, 31	11, 25	7	3, 17, 31	11, 25
2	14, 28	8, 22	8	14, 28	8, 22
3	6, 20	14, 28	9	4	12, 26
4	3, 17	11, 25	10	2, 16, 30	10, 24
5	1, 29	9, 23	11	6, 20	14, 28
6	5, 19	13, 27	12	4, 18	12, 26



도내 무료법률 상담제도 안내



기관명	상담 신청 방법 (사전예약)		
	상담일시	장 소	비 고
전북특별자치도 희망법률상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화 280-2847 • 인터넷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://www.jeonbuk.go.kr ▶ 분야별 정보 ▶ 법무/행정/조세 		
	주간: 1·3·5주(수) 야간: 2·4주(목)	전북특별자치도 희망법률상담실 (1층)	방문, 전화 · 사이버상담
군 산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전예약 없으며, 방문순서로 상담 진행 • 전화 454-2334 		
	2·4주(월) 17:00~18:00	군산시청 민원실 1층	방문상담
전주지방법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터넷 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://jeonju.scourt.go.kr ▶ 사법접근센터 		
	화, 수, 목 10:00~16:00	전주지방법원 청사1층 종합민원실 내 사법접근센터	사전예약 홈페이지
대한법률 구조공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화 국번없이 132 • 인터넷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s://klac.or.kr ▶ 상담일 및 장소예약 		
	평 일 10:00~17:00 (주말, 공휴일 제외)	전주지부, 군산·남원·정읍출장소, 익산·김제·진안·무주·장수·고창·부안지소	전화, 사이버, 방문, 화상 상담 ▶ (전주지부): 전주, 완주, 임실 ▶ (남원출장소): 남원, 순창
법 무 부 (법률홈닥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화 • 전주시청 281-0309 • 익산시청 858-9280 •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251-1860 • 인터넷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https://lawhomedoctor.moj.go.kr 		
	평 일 10:00~17:00 (주말, 공휴일 제외)	전주시청	상담대상 취약계층 (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, 독거노인, 결혼이주여성 등)
		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(전주 금암동) 익산시청 법률홈닥터 상담실 (3층)	
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변호사회 5개 시·군	매월 넷째주 월요일	김제시 법무부서 ☎540-3723	
	매월 두번째 월요일	완주군 법무부서 ☎290-3961	
	매월 셋째주 월요일	임실군 법무부서 ☎640-2055	
	매월 첫째주 월요일	진안군 법무부서 ☎430-2647 무주군 법무부서 ☎320-2714	
덕진경찰서 (수사 민원 상담)	매일 9:00 ~ 18:00	상담센터 ☎713-0735	

이장 대상 정치관계법 안내자료

I 당부사항

- 이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.
- 2024. 04. 10.(수)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.

II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

1. 법원 판례 주요내용

-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하나로 이장을 들고 있는 이유는, 이장은 그 업무 및 직책상 선거에 직·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것이므로, 선거의 자유·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고, 이러한 제한은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.(대전고등법원 1996. 12. 27. 선고 96노242 판결)

2. 관련법령

- 가.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(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)
 -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,
 -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거사무원, 회계책임자, 활동보조인, 연설원, 대담·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90일까지(24.1.11.까지) 그 직을 사임해야 하고, 선거일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습니다.
- 나. 「공직선거법」 제86조(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)
 - 이장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
-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(예정)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

업적 홍보의 개념

- 「업적」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말하고, 미담사례를 발굴 소개하려는 취지였다 하여 홍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(대법원 1997.4.25. 선고 97도320).

-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

‘선거운동 기획 참여 및 기획의 실시관여 행위’의 의미

-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,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·지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며,
- “기획(企劃)”이란 일을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고, “참여”란 참가하여 관계함을 뜻하며, “관여”는 관계하여 참여함이 그 사전적 의미임(헌법재판소 2008.5.29. 결정 2006헌마1096).
-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료제공, 홍보물 문안 검토, 연설문 작성, 인터뷰자료 작성, 토론 관련 질문수집, 당선소감문 작성 등이 이에 해당됨.

- 정당 또는 후보(예정)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

3. 벌칙 : 3년 이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 벌금(선거법 제255조①제2호, 제10호.)

4. 위반행위 주요사례

- 00읍의 이장인 甲은 기초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000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장애인 300여명에게 자신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행위
- 00면의 이장인 甲은 A정당 후보자 乙과 함께 A정당 후보자의 당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거소투표대상자인 丙외 9명의 선거인의 집을 방문하여 그들의 투표용지에 A정당 후보자에게 직접 기표하거나, 기표하도록 종용하는 등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고, 거소투표에 영향을 준 행위
- 00면 이장인 甲은 000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던 乙을 만나 ‘선거때 도와달라’는 부탁을 받은 이후 수시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선거분위기를 乙에게 보고하거나,

무소속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약20여명의 선거구민들로부터 서명·날인을 받아주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으며, 그 대가로 2회에 걸쳐 130만원을 제공받았음

-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.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를 지지.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
-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경선운동을 위하여 정당에의 입당을 권유하거나 입당원서를 전달 또는 보관하는 행위
- 반상회 기타 주민모임에서 선거에 관하여 금품, 선물, 향응을 제공 또는 전달.배부하는 행위
- 특정 정당.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의 선거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연설회 일정 등의 동정을 알려주는 행위
- 특정 정당.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 또는 운동원의 부탁에 따라 통·리·반 명부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성향.지지도 및 여론 등을 알려주는 행위
-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주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
-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관내 주민의 주소와 집을 알려주기 위해 동행하는 행위
- 정당의 집회나 특정후보자 연설회시 주민을 동원하고 참여주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행위